

# 하도급거래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을 위한 실천사항

## 제 1 장 총 칙

### 제1조 【목적】

본 실천사항은 주식회사 DB하이텍(이하 “회사”라 함)이 일정규모 이상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스스로 사전에 심의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지침」(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 【기본원칙】

내부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용은 자율성, 적적성 및 실효성 확보를 기본으로 하며 법령 및 정관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회사의 경영방침에 부합되어야 한다.

회사는 사전 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내부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용을 위한 개별·구체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 제 2 장 설치 및 운용

### 제3조 【구성】

내부 심의위원회는 하도급관련업무 담당임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임직원으로 구성, 운영하며, 필요시에는 유관부서의 부서장이 참여할 수 있다.

### 제4조 【운영】

내부 심의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며, 현안 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정기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안전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 【심의】

① 내부 심의위원회는 회사가 직전사업년도 전체 하도급거래금액에 대한 수급사업자별 당해사업년도 개별 하도급거래계약(예상)금액이 2% 이상인 거래에 대하여 계약체결, 가격결정과정의 공정성 및 다음 각 호의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사전 심의한다.

1. 서면계약서 발급의무 준수여부
  2. 내국신용장 개설의무 준수여부
  3.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 준수여부
  4.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위반여부
  5. 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 위반여부
  6.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위반여부
- ② 내부 심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의 선정, 등록, 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정성 여부 등을 사전 심의한다.
- ③ 내부 심의위원회는 협력업체 미선정 또는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건을 심의한다.

#### 제6조 【의견청취】

내부 심의위원회는 필요시 관련 수급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익명성을 보장한다.

## 제 3 장 시정, 보관 및 기타

#### 제7조 【시정 및 제재조치】

심의 안건이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내부 심의위원회 스스로 시정하여야 하며, 관련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관련 사규에 따라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8조 【보관】

내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등과 관련한 문서는 심의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한다.

### 부 칙

1. 2024년 4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